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76회 제1차 정례회(2025. 6.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5-61
----------	-------

2025. 6. 19.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위생과)
- 나. 제 출 일 : 2025. 5. 23.
- 다. 회 부 일 : 2025. 5. 26.

2. 제출이유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등)

○ 위탁시설 :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사무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컨설팅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대상별¹⁾ 교육 실시
- 어린이·사회복지 연령별·대상별·질환별 식단·조리안내서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등 식생활 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 위탁기간 : 2026. 1. 1.~2028. 12. 31.(3년)

○ 사업대상

- 어린이급식인원 100명(사회복지시설 50명) 미만의 영양사가 없는 시설

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221	157	4	22	38

- 소요예산 : 750,000천원[국(30%)·시(35%)·구비(35%)]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내
실있는 시설 운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환경 제공
-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운영의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1) (어린이) 어린이, 조리원, 원장, 교사, 부모
(사회복지) 입소자, 조리원, 시설장, 돌봄종사자, 가족 또는 보호자

4. 검토의견

가. 제출 배경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일정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 동의안은 마포구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전담 센터 운영이 구의회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재위탁을 위해 제출됨.

나. 주요 내용 검토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은 성장기 아동 및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과 영양 균형 확보라는 공중보건적 과제를 다루는 핵심 서비스로서, 위생관리 부실로 인한 집단식중독 및 건강 불균형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에 있어 매우 높은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
-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비스 실패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수 있으므로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마포구 관내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와 사회복지시설 50명 미만 시설은 표와 같음.

계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221	157	4	22	38

다. 종합 의견

-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9월 공개모집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최초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영양사의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등으로 센터를 운영하였음.
- 2023년 6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 차례 재계약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급식관련 위생 및 영양관리는 연속성과 노하우가 요구되는 분야로 시설 관리능력 저하 및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이 안정적으로 필요함.
- 이에 행정기관의 직영으로는 전문인력 확보 및 운영이 곤란한 점과 인건비 절감 등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민간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다만, 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의 수탁기관 선정 및 사후평가 과정에서 공개모집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 참여, 성과지표와의 연계 등의 계약이 필요해 보이며, 관행적인 운영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참고 1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자치구별 센터 운영현황

(’25.4.30. 기준)

연번	구분	설치연월일	운영(수탁)기관	소재지	비고
1	종로구	'17.09.22.	배화여대 산학협력단	종로구 필운대로1길 34(필운동)	
2	중 구	'15.04.01.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중구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3	용산구	'20.09.01.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청파동2가)	
4	성동구	'13.12.20.	한양여대 산학협력단	성동구 살곶이길 200(사근동)	
5	광진구	'21.09.01.	(사)대한영양사협회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자양동)	
6	동대문구	'18.11.20.	경희대 산학협력단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7	종랑구	'19.07.17.	서일대 산학협력단	종랑구 용마산로90길 28(면목동)	
8	성북구	'11.04.06.	동덕여대 산학협력단	성북구 장월로1마길 56(상월곡동)	
9	강북구	'13.12.01.	성신여대 산학협력단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미아동)	
10	도봉구	'13.06.01.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도봉구 삼양로144길 33(쌍문동)	
11	노원구	'11.05.30.	서울여대 산학협력단	노원구 화랑로 621(공릉동)	
12	은평구	'11.10.04.	상명대 산학협력단	은평구 은평로13길 10(응암동)	
13	서대문구	'19.09.01.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서대문구 성산로24길 5(신천동)	
14	마포구	'20.09.01.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마포구 만리재로96 403호 (공덕동)	
15	양천구	'18.08.08.	강서대 산학협력단	양천구 공항대로 650, 201호(목동)	
16	강서구	'11.06.10.	숙명여대 산학협력단	강서구 강서로52길 89, 6~7층(내발산동)	
17	구로구	'13.06.01.	(사)대한영양사협회	구로구 가마산로25길 21(구로동)	
18	금천구	'11.11.01.	상명대 산학협력단	금천구 두산로 75, 502호 (독산동)	
19	영등포구	'20.09.01.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영등포구 경인로 900 102동B103(영등포동)	
20	동작구	'17.08.30.	(사)대한영양사협회	동작구 국사봉길 12 301호(신대방동)	
21	관악구	'21.12.01.	(사)대한영양사협회	관악구 관악로 98 2층 201호	
22	서초구	'13.06.01.	서울대 산학협력단	서초구 방배로 173(방배동)	
23	강남구	'21.09.01.	국민대 산학협력단	강남구 개포로38길 12 2층(개포동)	
24	송파구	'13.06.01.	가천대 산학협력단	송파구 송이로36길 68, 4~5층(문정동)	
25	강동구	'13.06.01.	가천대 산학협력단	강동구 명일로229-1길동제2자치회관1층	

[관 계 법 령]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